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42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

###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전거 보험” 가입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 자전거 보험 가입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으로, “자전거이용의” 를 “자전거 이용의” 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전거주차장” 이란 자전거 주차장치” 를 ““자전거 주차장” 이란 자전거주차장치”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전거보관소” 란 자전거 주차장치” 를 ““자전거 보관소” 란 자전거주차장치” 로, “자전거주차장” 을 “자전거 주차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전거정비소” 란” 을 ““자전거 수리센터” 란” 으로, “고장난” 을 “고장 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전거대여소” 란” 을 ““자전거 대여소” 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 을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 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협의회” 를

“구 체육회” 로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 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4. 자전거 이용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에 관한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7. 무단방치자전거의 현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자전거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4조의 제목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구민의 권리와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전거이용”을 각각 “자전거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로, “자전거운전자”를 “자전거 운전자”로, “자전거운전에”를 “자전거 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행자에 주의하면서”를 “주의하면서”로, “운전시”를 “운전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로, “해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을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를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같은법” 을 “같은 법” 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자전거주차장” 을 각각 “자전거 주차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를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에” 로,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를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를 “자전거 주차장의” 로, “자전거주차장을” 을 “자전거 주차장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 을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을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으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 을 각각 “자전거 주차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5조제3항” 을 “제5조제3항” 으로, “지원받은” 을 “지원받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을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를 “자전거 주차장의” 로, “자전거주차장에” 를 “자전거 주차장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후 동일장소” 를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 로, “자전거소유자” 를 “자전거 소유자” 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을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를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 을 “자전거 주차장” 으로, “자전거보관소” 를 “자전거 보관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전거대여소” 를 “자전거 대여소”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를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를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로, “자전거주차장” 을 “자전거 주차장”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을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전거이용” 을 “자전거 이용” 으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를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민 및 학생” 을 “구민” 으로, “자전거이용” 을 “자전거 이용” 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자전거교통안전” 을 각각 “자전거 교통안전” 으로, 같은 항 중 “자전거정비소” 를 “자전거 수리센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전거교통안전” 을 “자전거 교통안전” 으로, “정비소” 를 “수리센터” 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전거이용” 을 “자전거 이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를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전거시범학교” 를 “자전거 시범학교” 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을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 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로,

“자전거이용자”를 “자전거 이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구”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를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로, “이용시”를 “이용 시”로 한다.

제14조 중 “자전거이용”을 “자전거 이용”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보험의 가입 대상, 보상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6조제1항 중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자전거이용”을 각각 “자전거 이용”으로, 같은 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구 관계”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말한다.

-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 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

----

- 4. “자전거 수리센터”란 ----- 고장 난 -----.
- 5. “자전거 대여소”란 -----
- 6. -----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 ----- 구 체육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1.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 2.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 개선
-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 4. 자전거 이용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생 략)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5. 자전거 이용에 관한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보관

7. 무단방치자전거의 현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자전거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자전거 이용 -----
3. 자전거 이용-----

② 자동차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  
----- 자전거 운전에 -----

③ -----  
-----  
-----  
-----  
-----  
-----  
----- 운전 시 -----

④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

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로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④ -----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  
----- 하여야 ----.

제2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

-----  
-----  
-----  
----- 같은 법 -----  
-----  
-- 자전거 주차장-----  
-----.

② ----- 자전거 주차장-----  
-----.

③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에 -----  
----- 범위-----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  
-----  
----- 자전거 주차장을 -----  
-----.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후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  
-----  
-----.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  
-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  
-----.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  
----- 자전거 주차장  
-----.  
자전거 주차장-----  
-----  
-----  
-----.

② 제5조제3항-----  
-----  
----- 지원받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  
-----  
자전거 주차장에 -----  
-----.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3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9조(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 자전거 소유자  
-----  
-----  
-----  
-----.

제3장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9조(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수리센터 등의 설치) ① -----  
-----  
----- 자전거 주차장  
-----  
-----  
자전거 보관소-----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자전거 대여소-----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  
----- 범위-----  
-----.

⑦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

⑦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 자전거 주차장-----  
----.

제10조(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  
-----  
----- 자전거 이용  
-----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  
-----  
-----.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  
----- 구민--  
----- 자전거 이용-----  
-- 자전거 교통안전 -----  
-----.

② ----- 자전거 교통안전 -  
-----  
----- 자전거 수리센터-----  
-----.

③ -----  
- 자전거 교통안전 -----  
--- 수리센터 -----

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3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서울특별시동작구에 등록하여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

-----  
----- 범위  
-----.

제12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 자전거 이용-----  
-----  
-----.

② -----  
----- 자전거 보관소·수리센터 -----  
-----.

③ ----- 자전거 시범학교-----  
-----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자전거 이용자-----  
-----.

② ----- 구  
-----  
-----  
----- 자전거 주차장 .

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  
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  
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구청

보관소·수리센터 ----- 이용 시  
-----.

제14조(민간단체 등 지원) -----  
자전거 이용-----  
-----  
-----  
-----.

제15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4조  
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  
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  
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  
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  
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  
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  
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보험의 가  
입 대상, 보상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입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 자전거 이용 -----  
-----.

② ----- 자전거 이용 -----  
-----  
-----  
----- 구 관계 -----  
-----.

제17조(시행규칙) -----  
----- 필요 -----  
-----.